

의안번호	제36호
의결 연월일	2026년 4월 22일 (제337회)

심 의 의 결 사 항
-------------------

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 
비용 지원 조례안



발 의 자	정옥균 의원 등 3인
제출연월일	2026. 4. 8.

#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

(정옥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36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8.

발 의 자 : 정옥균·최명수·송영천의원

## 1. 제정이유

-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,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-93호) 된 LPG연료 소매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지원 범위 및 대상, 절차(안 제5조~제7조)
- 점검 및 자료제출 등(안 제8조)
- 사업비의 반환 등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, 제5조, 제32조, 제46조  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(2026. 4. 9. ~ 2026. 4. 16.) : 제출의견 없음

## 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와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”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.
2. “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”(이하 “판매자”라 한다)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.
3. “안전검사비용”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진 증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

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
2. 지원대상,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군수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범위)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. 단, 동일인이 판매소를 2개소 이상 운영할 경우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.

제6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금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지원절차)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세

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점검 및 자료제출 등)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 내역을 점검하게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판매자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업비의 반환 등)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,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.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2.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액화석유가스”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(液化)한 것[기화(氣化)된 것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

(생략)

제5조(사업의 허가 등)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,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(생략)

제32조(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)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(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)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, 집단공급시설, 판매시설, 영업소시설,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여 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.

③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

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46조(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)** ① 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10. 1.>

② 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1.>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